2023 년도판

— 아동수당 개요 —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분

가나자와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 졸업 전(만 15 세가 된 첫 연도 말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중심자(두 분 중 지속해서 소득이 더 많은 분)가 청구자가 됩니다.**
- 부모 이외의 분이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경우에는, 양육하고 있는 분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등의 장, 양부모, 미성년 후견인, 부모가 지정한 자, 그 외의 부양자 등)
- 단신부임 등으로 가나자와시에 주민등록을 하신 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만 대상이 됩니다. (국외 유학 중일 경우는 증명서 제출이 필요)
- 수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수급자가 되는 분의 신규 신청이 필요하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경우 가나자와시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무처에 청구해주세요.

아동수당 금액(월)

대상구분	소득제한 한도액 미만 (아동수당)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 (특례급부)	소득상한 한도액 이상
3 세 미만 (만 3 세가 된 달까지)	15,000 엔	아동 1 명당 5,000 엔	지급없음
3 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 (첫째・둘째)	10,000 엔		
3 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 (셋째 이후)	15,000 엔		
중학생	10,000 엔		

※ 만 18 세 이후 최초의 3 월 31 일까지의 기한 내 자녀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첫째로 계산합니다.
※ 소득 제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 페이지의【소득에 관하여】를 참조해주세요.

아동수당 입금에 관하여

입금일	6 월 15 일	10 월 15 일	2 월 15 일
지급대상월	2 월~5 월분	6 월~9 월분	10 월~1 월분

※ 15 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입금 통지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통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나자와 시외로 전출되는 경우는 전출 예정일이 속하는 월분까지 가나자와시에서 지급합니다. (원칙 익월 입금)

— 문의처 —
가나자와 시청 육아지원과 아동수당 담당
가나자와시 히로사카 1－1－1 우편번호) 920－8577
전 화 (076) 220－2285
FAX (076) 220－2360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아동수당 인정 청구서(신청 창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나자와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서류

가. 청구자 (부모 중 지속해서 소득이 더 많은 분)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청구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1) 사진이 있는 증명서의 경우, 1장: 개인번호 카드, 면허증, 여권 등)
  2) 사진이 없는 증명서의 경우, 2장: 건강보험증, 연금수첩, 사원증, 모자수첩 등)

나. 청구자 본인 이외(대리인)가 신청할 경우

-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위임장 혹은 **청구자 본인확인서류(얼굴사진이 첨부된)**의 원본)
- **대리인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1) 사진이 있는 증명서의 경우, 1장: 개인번호 카드, 면허증, 여권 등)
  2) 사진이 없는 증명서는 경우, 2장: 건강보험증, 연금수첩, 사원증, 모자수첩 등)

3. **청구자 본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또는 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 가입자는 필요 없음)
   ※배우자의 보험증, 자녀의 보험증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청구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번호를 알 수 있는 것
   (예: 개인번호 카드, 통지 카드, 개인번호 통지서 등)
5. **청구자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저금) 통장 또는 계좌를 알 수 있는 것
6. 별거 감호 신청서(청구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자녀 분의 개인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 연도 갱신에 관하여 (현황신고서 제출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연도 갱신이란】

매년 6월 이후에, 아동의 감호 상황과 소득을 확인하고 수당 수급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그 결과 지급금액이 변경되거나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이 없어지는 경우는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계속 수급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며 전년도와 지급 금액에 변경이 없는 경우, 안내문의 송부는 없습니다.

수급자격의 재심사를 위해 현황 신고서 제출이 필요했지만 2021년도부터 불필요해졌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만 계속 현황 신고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현황 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분)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인해 주민표의 주소와 다른 시구정촌에서 수급하고 있는 분
•이혼 협의 중으로 배우자와 별거 중인 분
•아동과 별거중인 분
•배우자의 주민표가 시외인 분 등

제출이 필요한 분에게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6월분 이후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관하여

2023년 4월・5월분 수당에 대해서는 2022년도(2021년 중)의 소득으로, 2023년 6월분 이후 수당에 대해서는 2023년도(2022년 중)의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1. 소득금액 계산 기준
   가. 자영업의 경우 → 수입에서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
   나. 직장인의 경우 → 원천징수표에 기재된 【급여 소득 공제 후의 금액】(급여수입금액이 아닙니다.)
   다.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 위 소득과 합산합니다.
   퇴직소득(종합과세), 산림소득, 토지 등과 관련된 사업소득 등, 장기양도소득, 단기양도소득, 선물거래와 관련된 잡소득 등, 특례적용이자 등, 특례적용배당 등, 조약적용이자 등, 조약적용배당 등

2. 소득제한 한도액
   ・1의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80,000엔(법정 사회보험료 상당액)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아래는 해당되는 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잡손・의료비・소규모 기업공제 등의 부금・장애인・한부모가정・근로학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 또는 공적 연금 등과 관련된 잡소득을 가지는 경우는, 그 합계액으로부터 100,000엔을 공제합니다.

3. 소득제한한도액・소득상한한도액표
   1 소득에서 2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아래 한도액과 비교합니다.
   ※부양친족 등의 인원수는 소득세법상 부양인원을 말합니다.

	①소득제한 한도액		②소득상한 한도액	
부양 친족 수(예시)	소득액 (만엔)	수입금액 (대략, 만엔)	소득액 (만엔)	수입금액 (대략, 만엔)
0명 (작년 말까지 아동이 태어나지 않은 경우)	622	833.3	858	1071
1명 (아동이 1명인 경우)	660	875.6	896	1124
2명 (아동 1명+ 연수입 103만엔 이하의 배우자)	698	917.8	934	1162
3명 (아동 2명+ 연수입 103만엔 이하의 배우자)	736	960	972	1200
4명 (아동 3명+ 연수입 103만엔 이하의 배우자)	774	1002	1010	1238
5명 (아동 4명+ 연수입 103만엔 이하의 배우자)	812	1040	1048	1276

왼쪽 표①(소득제한 한도액) 미만인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왼쪽 표①이상②(소득상한 한도액) 미만인 경우
→법률 부칙에 근거하여 특례금
(아동 1명당 일률적으로 월 5,000엔)을 지급합니다.

왼쪽 표②(소득상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 및 특례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된 이후에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재차 인정청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도 이후 소득액이 감소하여②를 밑돌 경우(다음 연도 5월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수정신고를 하고 소득액이 ②를 밑돌 경우(수정신고 후 신속히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이 있었을 경우 신고서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동이 있었을 때는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발생일(출생, 시설입퇴소, 전출예정일 등) 다음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지급하지 못하는 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유	필요서류
출생 등으로 인해 자녀가 증가했을 경우	금액 개정 청구서 ※수급자의 보험증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자녀와 별거하게 되었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별거 감호 신청서 ※자녀의 개인번호 기재를 필요로 합니다.
수급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수급 사유 소멸 신고서 혹은 금액 개정 인정 청구서
자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수급 사유 소멸 신고서 혹은 금액 개정 인정 청구서
자녀가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한 경우	인정 청구서 혹은 금액 개정 청구서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수급 사유 소멸 신고서 ※근무처에 신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자 등(배우자 및 아동)의 개인번호를 새롭게 등록·변경·삭제할 경우 예: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번호 등록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번호의 삭제 등	개인번호 변경 등 신청서
입금계좌의 금융기관을 변경할 경우 결혼 등으로 인해 계좌명의를 변경할 경우	계좌 대체 지급 변경 의뢰서 (단, 변경은 수급자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가나자와 시외로 전출했을 경우	전입처의 시구정촌(市区町村)으로 신규 신청을 해주십시오.
3 세 미만 아동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신(수급자)이 가입하는 연금이 바뀌었을 경우	변경 신고

※가나자와 시내로 이사할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제외)

접수 창구

창구명	소재지	전화	접수시간
본청육아지원과	히로사카 1-1-1	220-2285	9:00~17:45
본청시민과		220-2241	
모리모토(森本)시민센터	미나미모리모토마치 누 33	258-1130	8:30~17:15
가나이와(金石)시민센터	가나이와토리마치 3-14	267-0001	
사이가와(犀川)시민센터	스에마치 6-67-1	229-0001	
야스하라(安原)시민센터	후쿠마스마치기타 1067	249-2001	
누카(額)시민센터	누카다니 3-1-1	298-0045	
오시노(押野)시민센터	요카이치 2-464	241-2559	
아사카와(浅川)시민센터	다가미노사토 2-3	221-3344	
신칸다(新神田)시민센터	신칸다 4-3-10 (가나자와신칸다합동청사)	291-6266	
미나토(湊)시민센터	미나토 3-5-9	239-2211	
혼마치(本町)시민센터	혼마치 1-5-3 (리파레 2 층)	260-0365	
오미초(近江町)시민센터	아오쿠사마치 88 (오미초시장관 4 층)	260-0250	
이즈미노(泉野)시민센터	이즈미가오카 1-2-22	242-8552	
이즈미노복지건강센터		242-1131	

모토마치(元町)시민센터	모토마치 1-12-12	２５２－０２５７	
모토마치복지건강센터		２５１－０２００	
에키니시(駅西)시민센터	사이넨 3-4-25 (가나자와시보건소)	２３４－５１４１	
에키니시복지건강센터		２３４－５１０３	